

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

기준일: 2021.05.20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I

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항의 정보는 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.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5.3.4②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(이하 "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II

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, 고유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항의 정보는 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
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

아래 각 부분 상호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교류를 제한함.

- ① 고유재산 운용 부문
- ② 집합투자기구 운용 부문
- ③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(PEF) 운용 부문

4. 정보교류차단 부문별 차단 대상정보

- ① 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5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6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-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 사이의 거래
-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투자자문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(자전거래)
- 법규상 허용된 자전거래 중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는 거래
-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중 특정 수익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는 거래
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
-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거래

② 대응방안

-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.
-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,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.
-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, 그 밖의 거래 금지.

글로벌원자산운용 주식회사